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33

제출일자 : 2003.

제 출 자 : 달 성



□ 제정 이유

청소년들의 면학여건 조성과 군민의 평생교육 공간 마련을 위하여 군민 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군민독서실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95조

□ 주요골자

○ 시설 사용 (안 제5조)

- 열람실

- 이용시간 : 매일 09:00 ~ 24:00

- ※ 일요일 : 08:00부터 입실

- 이용방법 : 입장순서에 의한 자율좌석제

- 이 용 료 : 무료

- 공연장 : 사전신고후 사용

- 사용시간 : 09:00 ~ 22:00

- 사 용 료 : 무료

○ 독서실의 휴관(안 제6조)

-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 기타 시설의 개·보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입실의 제한규정(안 제8조)
 - 전염병 질환자
 -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음주, 소란행위자 등
- 독서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소속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
-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제정조례안 : 붙임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3. 6. 5 ~ 6. 24(20일간) - 의견없음
- 예산수반사항 : 있음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이하 "독서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면학여건 조성과 군민의 평생교육 공간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독서실은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28-2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독서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한다.

1.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연장 사용의 허가 및 취소
3. 독서실 시설의 유지 및 관리
4. 기타 독서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리) 군수는 독서실 운영을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제5조(시설사용) ① 독서실내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열람실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24:00까지로 하며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일요일은 08:00시부터 입실한다.
2. 공연장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독서실내 시설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열람실의 이용방법은 입장순서에 따라 자율좌석제로 한다.
2.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연 및 행사의 긴급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표2]의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휴관) 독서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독서실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시설의 개·보수 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공연장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지나친 상업적 목적 또는 정당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입실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실을 제한하거나 입실 후라 할지라도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면학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음주 만취자, 소란행위자, 기타 퇴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제9조(손해배상) ① 시설이용자는 독서실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은 훼손한 물품과 동일한 현물이나 구매 또는 수선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④ 제1항의 대상자가 연소자로서 배상능력이 없을 때 보호자에게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관리) 독서실내에는 이용자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독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독서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①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또는 운영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기간 동안 독서실 운영의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독서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
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며,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연장사용허가신청서

사	주 소				
용	직업 또는 단체명			전화번호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용 기간	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	
사용 목적					
행사 주요 내용					
<p>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운영조례 제 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공연장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p> <p>200 년 월 일</p> <p>신청자 성명 (인)</p> <p>대구광역시달성군수 귀하</p>					

[별표 2]

공연장사용허가서					
사 용 자	주 소				
	직업 또는 단체명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 용 기 간	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목 적					
행사 주요 내용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운영조례 제 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공연장시설 사용을 허가함					
200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수 (직인)					